

# 대학원학칙 미디어대학원 시행세칙

2004.3.1 제정 2006.3.1 일부개정  
2007.9.1 일부개정 2008.9.1 일부개정  
2011.3.1 일부개정 2015.3.1 일부개정  
2016.9.1 일부개정 2017.9.1. 일부개정  
2018.3.1. 일부개정  
2019.9.1. 일부개정  
<미디어대학원 행정실>

- 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함)이 미디어대학원(이하 "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언론분야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언론 및 관련 분야의 실제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와 지도급 실무자를 육성 또는 교육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.
- 제 3 조 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(5학기)로 한다.  
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- 제 4 조 (수업)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.
- 제 5 조 (휴학기간) ① 휴학기간은 2년 까지 가능하며,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.  
② 군복무,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단,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.  
③ 기타 휴학의 경우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준용하며, 미디어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 6 조 (재입학의 제한)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.  
② 본 대학원에 재학하다가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을 불허한다.
- 제 7 조 (전공의 변경) ① 입학 후 전공을 변경 할 수 있다.  
②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
1. 전공변경허가원  
2. 성적증명서
- 제 8 조 (교육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- 제 9 조 (학기별 취득학점) 학기별 학점취득은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
- 제 10 조 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 
② 상호 학점인정을 협약한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

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수강신청 정정)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.

제 12 조 (학점인정)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
② 상호 학점인정을 협약한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과목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 13조 (수료방법과 요건)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졸업시험 28학점 이상, 졸업논문 26학점 이상, 연구과정 12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통필수 4학점, 전공선택 6학점(전공필수 2학점 포함), 기타과목 12학점, 논문작성법 2학점, 논문지도 2학점 등 총 2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을 면제받고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통필수 4학점, 전공선택 6학점(전공필수 2학점 포함)을 포함한 기타과목 18학점 등 총 2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지도교수) 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3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,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 15조 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지도교수 변경신청서
2. 주임교수 및 신,구 지도교수의 승인서

제 16조 (학위청구 자격) ① 학칙 제32조, 본 시행세칙 13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 최저학점을 이수하고, 본 시행세칙 21조에 명시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학칙 제32조, 본 시행세칙 13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 최저학점을 이수하고 본 시행세칙 21조에 명시된 종합시험과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면제한다.

제 17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)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제 18조 (학위청구논문 계획서)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9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, 논문 원고 3부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전기는 5월 31일, 후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 20조 (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)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(영어요약본 필히 첨부)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21조 (종합시험) ① 기초공통영역과 전공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
- ② 종합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
- ③ 기초공통영역은 공통필수과목으로, 전공시험은 전공 필수과목으로 구성한다.
- 제 22조 (종합시험 응시자격) ①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 2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다.
- ② 종합시험 과목을 시험 응시 전 학기까지 이수한 학생만 응시할 수 있다.
- 제 23조 (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 24조 (졸업시험) ① 졸업시험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에 졸업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졸업시험은 전공선택과목 영역으로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- ③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날짜 안에 수험료와 함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졸업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.
- 제 25조 (종합시험 및 졸업시험) 종합시험과 졸업시험은 응시회수 제한 및 신청 연한을 두지 아니한다.
- 제 26조 (논문심사위원회)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- 제 27조 (졸업시험위원회) ① 졸업시험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을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졸업시험위원회의 구성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2인(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)으로 한다.
- ③ 졸업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졸업시험에 관한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- 제 28조 (논문심사)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 하며, 합격은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제 29조 (결과 보고) 대학원장은 종합시험, 졸업시험, 논문심사의 결과를 본 대학원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30조 (장학금)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“미디어대학원 장학금 운영내규”에 의한다.
- 제 31조 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[별지 서식 1]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- 제 32조 (연구생)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
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.

제 33조 (연구기간 및 연구과제)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
제 34조 (대학원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대학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미디어학부 전체 교원으로 이루어진다.

③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.

④ 위원회는 본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6장 2절 21조가 명시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⑤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"위원회설치운영규정"을 준용한다.

제 35조 위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1,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

① 제7조(전공변경에 대한 적용례), 제13조(수료방법과 요건에 대한 적용례)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1조, 제22조(종합시험에 대한 적용례)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제2학기 기준 재적생부터 적용한다.